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592

발의연월일: 2021. 7. 20.

발 의 자: 김철민·고영인·권인숙

김민철 • 민형배 • 박상혁

서동용 • 안민석 • 유동수

이병훈 • 이원욱 • 이정문

조응천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는 무인 단속용 장비와함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,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를 "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"로 규정하여 정작 신호기 설치가 필요한 횡단 보도에는 설치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.

해당 규정에 따른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에는 신호기가 이미 설치된 곳이 많아 신규 설치 대상 횡단보도가 적은 반면, 실제 어린이의 통행 이 잦은 횡단보도라도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가 아닌 경우 신호기 설 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임.

한편,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,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.

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기를 추가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·관리 및 공개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되, 필요한 정보는 시장등에게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, 교통약자인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보다 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5항 및제6항·제7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5항제1호 중 "신호기"를 "신호기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기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·관리 및 공개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구축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 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요 청을 받은 시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	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
및 관리) ① ~ ④ (생 략)	및 관리) ① ~ ④ (현행과 같
	음)
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	5
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	
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	
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	
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	
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	
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	
다.	
1.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	1
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	
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	
상 횡단보도의 <u>신호기</u>	<u>신호기 또는</u>
	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횡
	<u>단보도의 신호기</u>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
	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
	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 및
	공개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
	<u>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</u>

<신 설>

운영하여야 한다.
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구축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등에게 요청할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청에 따라야 한다.